



# 시범조사표 작성요령

##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수

- 사업체노동력조사의 본조사와 동일한 종사자수로 상용+임시일용+기타종사자를 의미

## 휴업조치란?

-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(예: 코로나19)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회사가 임시로 조업(영업)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말함

## 휴업조치 유형 및 휴업조치기간 중 적용근로자(예시)

**【 예 시 】** 평소 4명 근로자가 근로하고, 근로자 1인당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업체의 휴업조치

\* A, B, C, D는 근로자 개인을 의미

유형1	근로자			
	A	B	C	D
소정 근로 시간 8시간	0시간 근로	0시간 근로	0시간 근로	0시간 근로

유형2	근로자			
	A	B	C	D
소정 근로 시간 8시간	8시간 근로	8시간 근로	0시간 근로	0시간 근로

유형3	근로자			
	A	B	C	D
소정 근로 시간 8시간	6시간 근로	6시간 근로	6시간 근로	6시간 근로

유형4	근로자			
	A	B	C	D
소정 근로 시간 8시간	6시간 근로	6시간 근로	8시간 근로	8시간 근로

유형5	근로자			
	A	B	C	D
소정 근로 시간 8시간	6시간 근로	6시간 근로	0시간 근로	0시간 근로

유형6	근로자			
	A	B	C	D
소정 근로 시간 8시간	6시간 근로	8시간 근로	0시간 근로	0시간 근로

- (유형1) 일시적으로 사업체 전체의 조업(영업)을 중단한 경우, 적용근로자: 4명(A, B, C, D)
- (유형2) 사업체 내 일부 근로자만 근로한 경우, 적용근로자: 2명(C, D)
- (유형3) 전체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, 적용근로자: 4명(A, B, C, D)
- (유형4) 일부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, 적용근로자: 2명(A, B)
- (유형5) 사업체 내 일부 근로자만 근로하고, 근로한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, 적용근로자: 4명(A, B, C, D)
- (유형6) 사업체 내 일부 근로자만 근로하고, 근로한 일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, 적용근로자: 3명(A, C, D)

## 조업(영업)시간 변화 계산

- 정상조업(영업)시간 대비 조사기준월의 조업(영업)시간 비율로 계산  
↳ 단, 사업체 내 조업(영업)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 생산라인별, 영업부문별 등 조업(영업)시간을 계산 후 평균

**【 예 시 】** 정상 조업(영업)일 20일에 1일 8시간 조업하는 사업체에서 조사기준월 조업일 20일에 1일 6시간 조업한 경우

$$100 - \left( \frac{120\text{시간}(20\text{일에 } 1\text{일 } 6\text{시간 조업})}{160\text{시간}(20\text{일에 } 1\text{일 } 8\text{시간 조업})} \times 100 \right) = 100 - 75 = 25\% \text{ 단축}$$

## 근로자(평균)의 실근로시간 변화 계산

- 평소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근로시간 대비 조사기준월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근로시간의 비율로 계산 (소정근로시간이 아님에 주의)

**【 예시1 】** 평소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160시간 근무하는 사업체에서 7월 중 전체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140시간을 실제로 근무한 경우

$$100 - \left( \frac{140\text{시간}}{160\text{시간}} \times 100 \right) = 100 - 87.5 = 12.5\% \text{ 단축}$$

**【 예시2 】** 5명의 근로자가 있고 평소 전체근로자 1인당 160시간 근무하는 사업체에서 휴업조치로 7월 중 1명은 근무하지 않고, 4명만 평소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한 경우

$$100 - \left( \frac{(160\text{시간} \times 4\text{명}) / 5\text{명}}{160\text{시간}} \times 100 \right) = 100 - \left( \frac{128\text{시간}}{160\text{시간}} \times 100 \right) = 100 - 80 = 20\% \text{ 단축}$$